

# [집합투자기구 변경 안내]

가. 대상 펀드 : 교보약사 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3호[주식]

나. 변경 시행일 : 2019년 1월 14일

다. 변경 내용 :

- 환매수수료 삭제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집합투자 규약]

구분	정정전	정정후
<b>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b>	①~② 생략 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현행과 같음
<b>제41조(환매수수료)</b>	① 이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Class A-e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3. Class A-f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4. Class C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5. Class C-e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6. Class C-I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7. Class C-W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8. Class C-P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9. Class C-P2 수익증권 : 해당사항 없음</p> <p>10. Class S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Class C-P2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b>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b></p>	<p>①~③ 생략</p> <p>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b></p>	<p>①~② 생략</p> <p>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④ 생략</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전	정정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위험	- 환매 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환매 요청시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환매 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표준편차 12.14%)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표준편차 13.35%)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3 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내용 생략	<b><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b>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 생략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b><u>- 환매수수료 : 없음</u></b>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업데이트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1. 재무정보</p> <p>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p> <p>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세전 기준)</p>		<p>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p> <p>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p> <p>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p>
<p>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라. 운용자산 규모</p> <p>-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p>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전	정정후
<p>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p>	<p>환매수수료 : 생략</p>	<p>- <b>환매수수료 : 없음</b></p> <p>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p>
<p>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p> <p>(1) 투자전략</p> <p>3. 운용전문인력</p>		<p>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p>
<p>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p> <p>(1) 투자전략</p> <p>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p>		<p>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p>
<p>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p> <p>(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p>	<p>교보약사자산운용(☞)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표준편차 12.14%)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p>	<p>교보약사자산운용(☞)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표준편차 13.35%)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3 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p>
<p>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p> <p>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p>		<p>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p>